

충청북도 관광약지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관광약자의 범위에 임산부, 영유아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

○ 오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관광약자에 임산부, 영유아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, 이동약자를 포함(안 제2조)

○ 인용조례의 제명을 수정(안 제6조)

- 「충청북도 사무위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존 “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”으로 정의되던 관광약자의 범위를 “영유아, 영유아 동반자, 어린이 및 이동약자 등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영유아 및 이동약자 등이 불편함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잘못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, 별다른 이견이 없음.